

【질문 2】 한국판 고향납세제도의 개요와 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에 대하여

1. 제도의 도입

2008년 제 17 대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정치권에서 ‘고향세’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듬해인 2009년도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0년간 제 18 대 국회에서 2건이 발의 되었고, 제 20 대 국회에서는 2017년까지 10건, 2018년도 2건 등 총 12건의 고향세제도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 고향납세제도 발의안 내용

고향납세제도에 대하여 발의된 법률안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방에 유리하도록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10개의 발의안을 보면 고향을 특정하는 부분과 기부금의 방식도 조세이전방식과 기부금의 성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고향납세제도 법률안 내용의 비교분석 >

발의안	공통사항		제도 운영 방식				
	고향 특징	이전대상 제한	형식	내용	국세-지방세	지방세-지방세	기부금성격
발의 1)	x	○	기부금	기부금	-	-	지정기부금
발의 2)	○	x	기부금	기부금	-	-	지정기부금
발의 3)	x	○	기부금	조세이전	소득세	-	정치자금
발의 4)	△ 首都圈	○ 首都圈	조세 이전	-	소득세	-	-
발의 5)	○	x	기부금	조세이전	소득세	-	정치자금
발의 6)	x	x	조세 이전	-	-	지방소득세	-
발의 7)	○	x	기부금	기부금	-	-	지정기부금
발의 8)	○	○	기부금	조세이전	소득세	-	정치자금↑
발의 9)	○	○	조세 이전	-	소득세	-	-
발의 10)	○ 住民外	x	기부금	조세이전	소득세	-	정치자금

가. “고향”을 특정하지 않는 법률안 보다 “고향”을 특정하는 법률안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고향의 특정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출신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이전 또는 기부금 모집자를 제한하지 아니하나,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제외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제도운영방식입니다. 조세이전방식 또는 기부금 방식을 선호하며, 기부금 방식도 정치자금 특례 등 실질적 조세이전방식과 국세-지방세 이전방식, 지방세-지방세 이전방식 등 다양한 제안이 있습니다.

라. 기부금 방식은 정치자금 기부금형식과 지정기부금 특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 만원 이내의 금액은 110 분의 100 을, 초과금액은 100 분의 15 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사업자의 경우 10 만원 초과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합리적인 도입방안

(1) 행정안전부의 입장(국정과제75-4)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의 지출급증과 세수감소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기부지역, 기부금 등 기부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기부방식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된 안건을 확정할 때에 다음의 4 가지 사항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합리적인 도입방안

첫 째, 고향의 특정여부

법률안에서 고향을 특정한다는 것은 기부자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고향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거주기간, 출생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고향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특정한다는 것은 기부대상자를 제한한다는 것이며 개인의 기부권리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둘 째, 조세이전 대상 또는 기부금모집기관의 제한에 대하여

지방재정자립도 등 재정력 지표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법과 수도권을 제한하는 방법 등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표가 해당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다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셋 째, 조세이전방식과 기부금방식

기부금방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이전방식은, 지방세-지방세 이전과 국세-지방세 이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세-지방세 이전은 지방세의 가장 고유한 특징으로서 응익성(応益性)이 확보되지 않는 점 즉,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세이전방식으로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은 응익성(応益性)이 아니라 응능성(応能性)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 째, 기부금의 성격

기부금의 종류에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 외 기부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제도가 달라집니다. 제시된 대안은 지정기부금 방식과 정치자금 기부금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의 정책목적상 권장하는 기부라고

한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일종의 조세이전방식이라 할 것인데, 일본의 경우 국민의 1% 정도만이 고향기부제를 활용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결과가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하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향에 대한 기부금”을 확산하겠다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례품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례품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조세경쟁을 유발하여 총 세수가 감소하므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으며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 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답례품 제공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제안

위와 같은 합리적인 방안을 참작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틀을 철계·추진해야 될 것이며 고향세제도를 일시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일단 소규모지역(예를 들면, 지방세수 하위권 지역, 출향민(出鄉民) 상위권지역, 인구감소율 상위권지역, 고령화 상위권 지역, 인기 향토특산물 하위권 지역 등)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해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장점은 실리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